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코로나19 소독 안내, 개학 이후 유·초·중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대학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020. 4.

교 육 부

목 차

I. 목적 및 기본원칙	1
1. 목적	1
2. 기본원칙	2
II.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2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3
3. 유증상자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4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5
III. 평상시 대응	6
1. 등교 전	6
2. 등교 시	6
3. 등교 후	7
IV.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7
V. 확진자 발생시 대응	8
VI. 기숙사 등 시설 관리	10
1. 기숙사	10
2. 기숙사 외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11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보고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어 위기단계가 상향(2.24., 경계→심각)되었으며,
 - 강한 전파력이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5.5.)을 고려할 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대학생 및 교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학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학·교직원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대학에 따라 규모, 운영 방법, 자원 등 제반여건이 다르므로 대학이 지켜야할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적용 가능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메스꺼움),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으며,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3.25.)

2

기본원칙

-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대면수업을 운영하는 시점에서부터 적용함
- 대면수업 실시 시, 등교(출근) 전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하지 않도록 하며, 등교 시 또는 등교 후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
 - ※ (유증상자) 37.5°C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사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 철저
 - ※ 수업시작 전·후, 수업 중 수시 환기를 통해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조성(단, 실외 미세먼지 농도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절)

II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1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 및 유관 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2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 철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누구나 해야 할 일

-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 씻기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는 것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37.5°C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출근) 중지
 - 3~4일간 경과 관찰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담당자 등에게 알린 후 등교 또는 출근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합니다.
 3.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4.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5. 의료기관 방문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합니다.
 6.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립니다.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3.25.)

- 해외 방문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출근) 중지
- 대학은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소속 학과, 부서 담당자, 지도 교수, 복무담당자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4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특히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이동 최소화를 위해 실내의 경우 가급적 1층에 마련하고, 실외의 경우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을 활용하여 마련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III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 학생 및 교직원 등은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 담당자 등에 연락
 - 대학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등교(출근) 중지 조치 후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하기

-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해당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 교직원 등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 3~4일간 해당 학생, 교직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2

등교 시

- 대학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열감지카메라, 체온계 등을 통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C 이상의 발열자는 출입 통제 및 별도 조치 시행

* (예시) 시설물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확인 완료 스티커(매일 변경) 등을 대상자의 팔 또는 옷에 부착하여 출입하도록 조치

- (별도조치)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상황에 맞게 귀가, 대학보건실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3 등교 후

- 수업(근무)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즉시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하고, 등교 시와 마찬가지로 별도 조치 시행
 - 학생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좌석 간격(1~2m)을 조정하고 강의 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
- 수업 간 공강 시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집합하지 않으며,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IV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등교 또는 출근 중지 학생·교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파악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되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 (참고) 의사환자 격리해제 및 관리 방안



V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대학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 (참고)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능동감시중임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소독안내(3판) 참조

- 대학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 확인시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

◆ (참고)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대학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등 조치 시행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VI 기숙사 등 시설 관리

1 기숙사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1일 통학 가능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
 - ※ 해당 학생의 통학시간, 통학 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협의 후 결정
-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
 - ※ 가능한 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교육실시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기숙사 내 화장실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고, 쓰레기통은 매일 비워 오염 물질이 기숙사 내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공기를 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입소생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기숙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 실시
- 기숙사 생활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숙사 관리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
- 보호자 또는 방문자, 외부인의 숙소 출입을 제한

□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건실이 아닌 별도 독립공간에 머물도록 하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해당학생이 감염이 의심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숙사 입소 학생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기숙사 등 1인실(화장실 및 세면실 포함) 대기 조치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시설운영 정상복귀
 - ※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결과 음성인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유증상자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장소(공간)는 방역조치*(일시적 이용제한, 소독 등) 실시
 - ※ 기숙사 입소생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2

기숙사 외 교내 다중이용시설 등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운동부실, 고시반 등)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

□ 강의실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내부에 손 세정제 비치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교내 식당

- 교내 식당 이용 개시 전 식당 전체 특별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당 환기 강화
 -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대학별, 식당별 여건에 맞게 학생 및 교직원 간 접촉 최소화 및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식사 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식사 할 수 있도록 조치(또는 투명 칸막이 등 물리적 격벽 설치)
- 식당 관리자는 종사자에 대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 발생 시 귀가 조치 및 코로나19 행동수칙 안내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착용하여 오염방지

□ 도서관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급적 이용을 제한하되, 개방하는 경우에도 접촉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열람실 운영시간은 가급적 도서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 (예시) 칸막이가 있는 좌석 위주 운영, 한 칸씩 띄어 앉기, 한 방향으로 앉기 등
- 무인 대출·반납기 등의 운영을 통한 비대면 장서 대출 실시, 장서의 반납 후 소독 실시 및 전자책 이용 권장

□ 동아리 활동 공간 및 휴게 공간

- 동아리방,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의 이용 제한을 통해 학생 간 접촉 최소화

□ 통근버스

-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 하며, 의심 증상자는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대학의 여건에 따라 좌석 분산 배치, 배차 간격 조정 등의 차량 내 밀집도 완화 조치 실시
 -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참고1

대면강의 준비 전·후 점검 사항(예시)

시기	추진·점검 사항
대면 강의 준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보완■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수시 현행화)■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격리 공간(일시적 관찰실) 마련■ 위생 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 등) 비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특별 소독 완료■ 학생 간 거리 유지위한 좌석 배치 ※ 가능범위 내에 강의실 조정■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의심 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에 대한 사전 안내■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의심 증상자 및 등교 중지자 등에 대한 출석 인정 기준 등 마련
대면 강의 시작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 출입제한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강의실, 화장실,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 학생 및 교직원 결석(근)현황 일일 모니터링■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평가 및 재조정■ 비누·손소독제 등 소진 물품 교체■ 일과 시작 전·수업 시작 전 충분한 환기 실시

참고2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C ~ 37.2°C 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C 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C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C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3

교육시설 소독 강화 방안

<소독의 종류 및 적용범위 등>

구분	적용 범위	시행주체
정기 소독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 전체 소독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전문 소독업체 위탁
일상 소독	학기 중 취약 시설 관리를 위한 소독	학교 자체 소독
임시 소독	행사 개최시 (시설임대 포함)	다수가 이용한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소독

□ 정기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가급적 대면수업 이전에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소독 완료하고, 이후 실시하는 정기소독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시기에 준하여 실시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4월~9월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은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

- (실시방법)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상황 종료 이전 정기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 소독업체 선정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청

□ 일상 소독

-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 등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체
- 시설 관리자는 청소 · 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임시 소독
 - (실시 시기 및 주기)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또는 행사 등 특이사항 발생시 노출 시설에 대한 소독 실시(1회)
 - (실시 방법) 정기소독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소독업체 위탁 시행
 - ※ 학교 내 환자 발생시 소독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소독지침(3판) 참조

□ 환자발생시 소독 방법

-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 코로나19 소독안내(2-1판 참조))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 해서 소독한다.
-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엘리베이터 등
-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며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소독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참고4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출처: 2020.3.3.(화)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일반원칙

-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에 더해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함
-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됨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음
- 감염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행동 수칙 준수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나.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2)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3)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 4)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등

□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착용상 주의사항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 3)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말 것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나.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

- 1)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것
-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를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할 것
- 3)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것

- 1) 정전기필터는 얇아서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할 것
- 2)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하여 틈새를 없앨 것
- 3)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정전기필터를 세탁하면 안 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에는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할 것

참고5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발행일 : 2020.2.27.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참고6

대학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출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일반 원칙

- 대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시설 이용제한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이동 경로 불명확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3.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

-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 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u>차아염소산나트륨</u> (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u>소독하고</u> <u>다음날까지 사용 제한</u> 권고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6)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이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사항 사례)

-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참고7

외부인용 문진 및 방문자 관리 서식[예시]

※ 대학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참고8

감염병 예방수칙(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질병관리본부 1339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참고9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찰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8조(발작 때 따라 100m를 이하로 절급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단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끼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치료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일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모니터링 방법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2회 이상 연락 시, 체온, 증상 알려주기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후 모니터링 서식에 기록하기(서식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권태감
- ✓ 인후통
-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단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참고12

코로나19 사례정의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4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신고 대상 >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 +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발열(37.5°C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